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바일 운영체제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3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모바일 운영체제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5. 21.

다. 회부연월일 : 2026. 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모바일 운영체제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라 함)에게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상호운용성 확보)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u>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도록 자신의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본 운영체제의 보안성·무결성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수단의 범위·제공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0조(금지행위) ① ----- ----- -----<u>앱 마켓사업자, 제12호의 경우에는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로 한정한다</u>-----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적 접근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전기통신설비¹⁾의 상호접속 허용 의무²⁾, 상호접속의 대가³⁾,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⁴⁾ 등에 관하여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3)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상호접속의 이용 대가를 줄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규정하고, 앱마켓 단계에서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⁵⁾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뿌리에 해당하는 기본 운영체제(OS) 및 하드웨어에 대한 상호 기술적 접근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대 빅테크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지난 2022년 12월 유럽연합(EU) 의회는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채택하였음.

○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전화번호와 독립된 개인 간 통신서비스,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① EU 역내시장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② 상업적 이용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작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③ 동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마켓사업자가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운영에 있어 지속적이고 견고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3년 9월 애플(Apple), 알파벳(Alphabet)⁶⁾, 아마존(Amazon),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총 6개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었음.

○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는 운영체제(OS)를 통해 접근하거나 제어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하여 해당 기능이 운영체제의 일부이거나 게이트키퍼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및 하드웨어 제공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상호 운영성을 위한 접근과 실질적인 연동을 허용해야 함.⁷⁾

- 게이트키퍼는 상호운용성으로 인해 제공하는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방해받지 아니하나,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은 게이트키퍼가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함.

6) 구글(Google)의 모회사

7) 「Digital Market, Act」 Article 6(7) The gatekeeper shall allow providers of services and providers of hardware, free of charge, effective interoperability with, and access for the purposes of interoperability to, the same hardware and software features accessed or controlled via the operating system or virtual assistant listed in the designation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3(9), regardless of whether those features are part of the operating system or are provided by the gatekeeper.(중략)

The gatekeeper shall not be prevented from taking strictly necessary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teroperability does not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operating system, virtual assistant, hardware or software features provided by the gatekeeper,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duly justified by the gatekeeper.

- 또한,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체 매출액(total turnover)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위와 같은 EU의 「디지털시장법」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취지로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본 운영체제의 보안성·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기업이 기본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와 연동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도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

용대상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애플이 제공하는 iOS와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로 구분되는데, 이 중 iOS는 애플이 제조하는 아이폰에만 연동되어 제공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삼성 등 별도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제공됨.
 - 개정안은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상호운용성에 관한 의무를 적용하면서, 접근 허용 대상으로 운영체제(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본 운영체제(iOS)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함께 제공하는 애플 외에 기본 운영체제(안드로이드)만 제공하여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구글도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적용 대상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조건”, “기술적 접근수단”, “보안성·무결성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 등의 주요 요건을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집행 과정에서 수범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운용성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제한한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⁸⁾ 또는 벌칙(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기술적 접근수단”의 범위·조건·방법 등을 사업자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동등한 조건”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 소프트웨어와 제3자의 소프트웨어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 보안 및 품질관리 측면의 중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시스템의 통합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셋째, 개정안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인

8)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특정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통상 마
찰 등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 제40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호운용성 제공 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
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
어 제2항의 위임 대상과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에 상호운용성 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임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계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동의

-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의 법 기술적 쟁점 해소 및 상호운용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규제대상 명확화, 벌칙 조항 추가, 위임 규정 보완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술적 접근 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 접근 수단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공정거래위원회: 신중검토

- ①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 대해서만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통상 이슈를 부각할 우려가 있으며, ② 개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현행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⁹⁾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 이미 규율하고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③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는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여러 사업 분야에 걸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당국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법무부: 수정동의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은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50조제1항제12호는 그 중 ‘부당한’ 거부 또는 제한만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규정과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의무규정에 맞추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차원에서 ‘모바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운영사업체제사업자가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개정안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은 고도의 기술적 사항에 해당하고, 국내 시장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은 신흥 해외 OS 경쟁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제공자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 연구개발에 상응하는 투자없이 고도화된 기능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특히, 개방형과 폐쇄형 생태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의무적인 상호운용성 규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필수적인 보안체계가 약화되어 기기 전반의 보안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설계 시 이러한 생태계별 특성이 면밀하게 반영되어야 함.
- 또한, 개정안이 의무의 여러 핵심사항을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업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애플: 신중검토

- 상호운용성의 보장을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혁신 유인 저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약화,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 시장에서의 신제품·서비스 출시 지연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기술의 제3자 제공 여부는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 무결성,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임.
- 개정안은 애플과 같은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 문언에 따르면 애플과 마찬가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이동통신단말장치)과 구글(OS)은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바 심각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은 한미 FTA에 따른 비차별 의무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¹⁰⁾에 ‘한국과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

10) 2025. 11. 1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https://www.president.go.kr/resources/u7gL1oOc>)

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 것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 구글: 신중검토

- 안드로이드 개방형 생태계의 핵심가치인 '상호운용성'의 확대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광범위한 상호운용성 의무 부과는 제조사의 자율적 혁신 및 신규 기능 출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실제로 EU 디지털시장법(DMA) 등 유사 규제로 인해 역내 최첨단 AI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불편이 초래된 선례가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5